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5352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이진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성일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103869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서,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51,106,8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351,1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다(원고 A는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원고 B

피고 C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서,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각 돈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는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 B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항의 “ 부산고등법원 2017나53644호”를 “ 부산고등법원 2017나52644호”로, 제14면 제8, 9행의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를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이고, 나아가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으로는 등기원인이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로, 제17면 제13행부터 제18면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고, 피고 D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범위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보증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②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N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3. 4. 5.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51,106,849원[= 150,000,000원 + 150,000,000원 × 0.24 × (5 + 214/365)]의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7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N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8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62,000,000원(= 750,000,000원 - 188,000,000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각 금원 중 금액이 더 적은 피보전채권액 351,106,849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351,106,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고 A에게 351,1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피고 C에게 망 E가 이미 1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만약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망 E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월 3% 상당의 고이율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보증채무는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2)

나. 판단

민법 제436조의2는 채권자의 정보제공 없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정보제공의무나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정보제공 내지 정보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정보제공 내지 정보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망 E로부터 ‘얼마 전에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어 형식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 C가 2021. 4. 6. 제출한 준비서면(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진술) 제2면 참조], ② 피고 C는 R과의 통화에서 “내가 S이(망 E의 아들)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보증을 썼지.”라고 말하면서 망 E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주채무자인 망 E의 신용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 내지 신용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고 A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임상민, 판사 김영환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38층 오피스텔

지하5층 784.51㎡ 지하4층 7,446.93㎡

지하3층 7,446.93㎡ 지하2층 7,446.93㎡

지하1층 7446.93㎡

1층 2404.64㎡ 2층 3688.71㎡

3층 3227.65㎡ 4층 1920.9㎡

5층 1,495.58㎡ 6층 2,709.92㎡

7층 2,709.92㎡ 8층 2,709.92㎡

9층 2,709.92㎡ 10층 2,709.92㎡

11층 2,709.92㎡ 12층 2,709.92㎡

13층 2,709.92㎡ 14층 2,709.92㎡

15층 2,709.92㎡ 16층 2,709.92㎡

17층 2,709.92㎡ 18층 2,709.92㎡

19층 2,709.92㎡ 20층 2,709.92㎡

21층 2,709.92㎡ 22층 2,709.92㎡

23층 2,709.92㎡ 24층 2,709.92㎡

25층 2,709.92㎡ 26층 2,709.92㎡

27층 2,709.92㎡ 28층 2,709.92㎡

29층 2,709.92㎡ 30층 2,709.92㎡

31층 1745.13㎡ 32층 1,706.61㎡

1) 원고 A는 1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피고 D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 A의 위와 같은 항소를 부대항소로 보아 판단한다.

2) 민법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